

제340회 1차 정례회

제1차 교육위원회

2023. 6. 19.(월)

경상북도교육청 개인이동장치 안전교육
강화 조례안
검 토 보 고 서

| | |
|------|------------|
| 의안번호 | 293 |
| 발의일자 | 2023.5.31. |
| 회부일자 | |



교육위원회
(수석전문위원 장중찬)

경상북도교육청 개인이동장치 안전교육 강화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: 김홍구 의원 외 11명

2. 제안이유

- 국가통계포털 자료에 따르면, 최근 5년간('17~'21) 교통사고 건수의 연평균증가율은 -1.6%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. 그러나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는 3,421건이며, 연평균 증가율은 96.2%로 해마다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음.
- 이에 급증하는 개인형 이동장치와 전동외륜보드 등의 사고를 줄이고 안전교육을 강화하여 학생의 안전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교육감은 개인이동장치 안전교육 강화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책무를 규정함(안 제3조)
- 나. 교육감은 개인이동장치 안전교육계획을 수립·시행하도록 하고, 안전교육 실시와 인명보호장구 착용을 하도록 규정함

(안 제4조~제6조)

다. 교육감은 개인이동장치 안전교육을 전문 기관·단체에 위탁과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, 안전수칙을 누리집 등에 적극 홍보하도록 함(안 제7조~제8조)

라. 교육감은 개인이동장치 안전교육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과 협력체계 구축을 할 수 있도록 함(안 제9조~제11조)

4. 관련법령

- 「도로교통법」, 「초·중등교육법」, 「도로교통법 시행규칙」

5. 입법예고 결과: 의견없음

6. 관련부서 협의

- 가. 규제심사: 심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음
- 나. 부패영향평가: 부패유발요인 없음
- 다. 예산조치: 미첨부 사유서 붙임

7. 검토의견

조례 제정의 필요성

- 본 조례안은 개인이동장치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계획, 안전교육 실시, 현장지도, 실태조사, 지원 등에 대해 규정하여 학생의 안전 증진에 기여함을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.

□ 조례안의 주요내용

- 안 제3조는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한 것으로 학생의 안전의무를 준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노력하도록 규정하여, 학생의 안전의무 준수에 대한 부분을 더욱 강조한 내용임.
-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교육감은 개인이동장치 안전교육 계획을 수립·시행하도록 하고, 안전교육 실시와 인명보호 장구 착용을 하도록 규정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됨.
-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교육감은 개인이동장치 안전교육을 전문 기관·단체에 위탁과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, 안전수칙을 누리집 등에 적극 홍보 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.
 - 제8조에 실태조사는 “개인형 이동장치”와 “기타 이동장치”에 대한 실태조사이므로 「경상북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조례」에 있는 실태조사보다 더 넓은 영역이고 학생이 이용하는 대부분의 이동장치를 포함하고 있어 학생안전 현황분석을 위해 실태조사는 적절하다고 판단됨.
-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는 교육감은 개인이동장치 안전교육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과 협력체계 구축을 할 수 있도록 신설한 규정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됨.

□ 종합 검토의견

- “개인이동장치”란 개인형 이동장치¹⁾와 기타 이동장치²⁾를 통틀어서 말하며, 개인이동장치는 코로나19 감염병 시대에 비대면 교통수단으로 공유서비스와 연계되어 빠르게 대중화 되었고,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관련 사고 또한 급증하고 있음.
- 최근 5년간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는 2017년 117건에서 2021년 1,735건으로 1,300% 이상 증가하였고, 경북의 교통사고건수는 2017년 6건에서 2021년 74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.

< 최근 5년간 개인형 이동장치(PM) 교통사고 현황(2017~2021년) >

| 구분 | | 합계 | 2017년 | 2018년 | 2019년 | 2020년 | 2021년 |
|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
| 전국 | 사고건수 | 3,421 | 117 | 225 | 447 | 897 | 1,735 |
| | 사망(명) | 45 | 4 | 4 | 8 | 10 | 19 |
| | 부상(명) | 3,721 | 124 | 238 | 473 | 985 | 1,901 |
| 경북 | 사고건수 | 115 | 6 | 12 | 7 | 16 | 74 |
| | 사망(명) | 3 | 0 | 0 | 1 | 0 | 2 |
| | 부상(명) | 122 | 6 | 14 | 7 | 20 | 75 |

출처 :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(TAAS)

- 1) 「도로교통법」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「도로교통법 시행규칙」 제2조의3에 따라 전동킥보드, 전동이륜평행차,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를 말함.
- 2)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를 말한다.
 - 가. 자전거, 킥보드, 인라인스케이트, 바퀴달린 신발 등
 - 나. 전동외륜보드
 - 다. 전동이륜보드
 - 라. 전동스케이트보드

- 이러한 상황에서, 본 조례안은 학생들이 개인이동장치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 실시, 현장지도, 안전사고 등에 관한 실태조사, 안전을 위한 교육 홍보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 안전 증진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이 조례의 제정은 시의적절하며 타당하다고 판단됨.

- 아울러, 경상북도교육감은 개인이동장치 안전교육 실시, 현장지도, 실태조사 등에 대한 효율적 홍보와 개인이동장치를 이용하는 학생의 안전강화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임.

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